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3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박춘선,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허 훈,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순찰로봇)를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나.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u>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생략) <u><신설></u>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제5조(지원심사)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5조(지원심사) ① 제4조제1항제2호-----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 예산을 기편성(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사업)하여 추진 중이며, 해당 예산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제2항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1,288,310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사업 운영)	(66,0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